



제433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교·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상향〉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33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3.
- 3) 회 부 일 : 2026.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5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1세로 상향하고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각각 2년씩 상향하며,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1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 ----- ----- -----.																																										
<table><tr><th>초임계급</th><th>최저연령</th><th>최고연령</th></tr><tr><td>소령</td><td></td><td>38세</td></tr><tr><td>대위</td><td></td><td>34세</td></tr><tr><td>중위</td><td></td><td>31세</td></tr><tr><td>소위</td><td>20세</td><td>29세</td></tr><tr><td>준위</td><td>20세</td><td>50세</td></tr><tr><td>부사관</td><td>18세</td><td>29세</td></tr></table>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table><tr><th>초임계급</th><th>최저연령</th><th>최고연령</th></tr><tr><td>소령</td><td></td><td>40세</td></tr><tr><td>대위</td><td></td><td>36세</td></tr><tr><td>중위</td><td></td><td>33세</td></tr><tr><td>소위</td><td>---</td><td>31세</td></tr><tr><td>준위</td><td>---</td><td>---(좌동)</td></tr><tr><td>부사관</td><td>---</td><td>31세</td></tr></table>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40세	대위		36세	중위		33세	소위	---	31세	준위	---	---(좌동)	부사관	---	31세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40세																																									
대위		36세																																									
중위		33세																																									
소위	---	31세																																									
준위	---	---(좌동)																																									
부사관	---	31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 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u>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u>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② ----- ----- ----- <u>있다.</u> ----- ----- ----- -----																																										

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③ ~ ⑤ (생략)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의 변화추이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은 2008년에 폐지되었고,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012년에 응시상한 연령이 상향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완화되는 추세임.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변동현황]

구분	응시연령 상한		
	기존	변경	비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5급 32세, 7급 35세, 9급 32세	-	'08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폐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간부후보생 30세, 소방사 30세	소방간부후보생 40세, 소방사 40세	'12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변경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간부후보생 30세, 순경 30세	경찰간부후보생 40세, 순경 40세	'12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변경

자료: 국방부

소위 임관연령에 관한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32세, 미국의 경우 42세로 우리나라 보다 임관연령 상한이 높고, 독일의 경우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는 등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소위 임관연령 해외사례]

구분	일본	미국	독일
임관연령	18 ~ 32세	18 ~ 42세	17세 이상

자료: 국방부

□ 이상과 같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변화추이와 소위 임관연령에 관한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및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 상승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장교·부사관의 임용 연령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연령은 지난 2024년 개정을 통해 이미 2년씩 상향된 바 있음¹⁾. 그러나 해당 개정 이후 경과기간이 길지 않아 상향된 연령 기준이 실제 군 인력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1)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최고연령 개정 전·후 비교

초임계급 최고연령	'24년 개정 이전	개정 이후(2024.1.1.시행)
소령	36세	38세
대위	32세	34세
중위	29세	31세
소위	27세	29세
준위	50세	50세
부사관	27세	29세

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임용연령을 다시 2년씩 상향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므로, 최근 개정에 따른 운영 결과와 변화 추이를 일정 기간 지켜본 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기간은 30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²⁾되어 있어 박사학위과정 재학³⁾, 질병 등의 입영연기 사유⁴⁾를 종합하더라도 병역의무는 30세 이

- 2)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 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 4)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전에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위·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하더라도 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실제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임용연령 상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역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초임계급 최고연령은 '24년도 개정을 통해 이미 상향된 바 있어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최고연령을 추가로 상향할 경우 31세 임용 시 일부 장교 계급의 연령정년(소령 50세)을 고려하였을 때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병역법」 등과의 법체계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10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군인 정년체계

군인사법 제8조제1항		
연령정년(제1호)	근속정년(제2호)	계급정년(제3호)
해당 계급에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전역	전체 근속기간이 정해진 근속 연수에 도달하면 전역	해당 계급에서 정해진 기간에 도달하면 전역
• 원수 : 종신 • 대장 : 63세 • 중장 : 61세 • 소장 : 59세 • 준장 : 58세	-	• 중장 : 4년 • 소장 : 6년 • 준장 : 6년
• 대령 : 56세 • 중령 : 53세 • 소령 : 50세 • 대위, 중위, 소위 : 43세 • 준위 : 55세	• 대령 : 35년 • 중령 : 32년 • 소령 : 24년 • 대위, 중위, 소위 : 15년 • 준위 : 32년	-
• 원사 : 55세 • 상사 : 53세 • 중사 : 45세 • 하사 : 40세	-	-

○ 진급최저복무기간

계급		중위 ↑ 소위	대위 ↑ 중위	소령 ↑ 대위	중령 ↑ 소령	대령 ↑ 중령	준장 ↑ 대령	소장 ↑ 준장
군인사법 (제26조)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1	2	6	5	4	3	1
	최저 근속기간	1	3	11	17	22	26	28
적용	최저 근속기간(조정)	1	3	10	17 16(육)	22	27	28
	진급 최저 복무기간(조정)	1	2	7	7 6(육)	5 6(육)	5	1